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산재 요양급여 결정 전 상병급여 지급 〉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414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산재 요양급여 결정 전 상병급여 지급(안 제42조제1항)	2

I. 제안경위

2024년 7월 30일 이수진위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7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경우 지급되는 산재 요양급여가 결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결정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에 상병급여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산재 요양급여 결정 전에는 우선적으로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질병과 부상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과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위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산재 요양급여 결정 전 상병급여 지급(안 제42조제1항)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현행법 상 요양급여¹⁾의 신청을 한 사람은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외에도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42조(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① 제41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사람은 공단이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u>요양급여</u>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제42조(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① 제41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사람은 공단이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u>요양급여, 같은 법 제49조의2에 따른 상병급여</u>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일반적으로 국민이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요양급여²⁾ 또는 의료급여³⁾를 지원하되,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이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각종 보험급여⁴⁾를 지급하는 이원화된 체계임.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

2)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3) 「의료급여법」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검사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또는 부상이 법률상 요건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하므로, 짧게는 수십일에서 길게는 수백일에 이르는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바,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들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충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산재사건의 평균 처리기간>

(단위: 일)

연 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산재 평균 처리기간*	40.9	39.1	43.4	47.6	55.0
업무상 사고	16.1	15.5	15.3	15.9	16.5
업무상 질병	186.0	172.4	175.8	182.0	214.5

*업무상 재해로 처리된 최초요양, 유족급여, 최초요양 결정성 요양비 청구서의 접수일부터 처리일까지의 기간

**자료: 고용노동부

따라서 현행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다. 삭제
-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을 한 사람은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신속한 치료를 도모하고 있음.

개정안은 요양급여의 결정 전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에 ‘상병급여’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이는 이수진위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2412호)에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요양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병급여’를 신설함에 따른 것임.

현행법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⁷⁾를 지급하고 있는데, 동 급여 또한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근로자가 받을 수 없는 구조임.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른 상병급여

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2412호) 제49조의2(상병급여) ①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요양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기간에 대하여 상병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질병휴가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한다.

② 상병급여의 지급기간은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상병급여는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하기 전 12개월간 보수 및 소득(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기간 월별 보험료액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 및 소득을 말한다)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소득일액”이라 한다)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1일당 지급액(이하 이 조에서 “상병급여일액”이라 한다)은 소득일액에 100분의 66.7을 곱한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상병급여일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최저소득일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최저소득일액을 상병급여일액으로 한다.

⑤ 국가는 상병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⑥ 사업주는 상병급여의 신청 및 지급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병급여의 지급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⑦ 그 밖에 상병수당의 구체적 지급기간,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가 신설되는 경우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 전까지 휴업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535